

2025년 「베이비부머 라이트잡」 참여기업 모집 2차 공고

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는 중장년 고용 활성화를 위하여 2025년 「베이비부머 라이트잡」 사업을 공고하오니 채용을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.

2025년 5월 1일

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

1

사업개요

가. 사업명 : 베이비부머 라이트잡

나. 사업내용

- 기업이 경기도 중장년을 유연한 일자리에 신규 채용 시, 1인당 월 40만원씩 신규 채용자에 소요되는 4대보험료, 교육훈련비, 근로환경개선 비용 지원

다. 지원규모 : 총 2,000명(채용 선착순)

라. 지원내용 : 신규 채용 1인당 월 40만원 기업에 지원

- 지원금 신청 : 매 홀수 달(5, 7, 9, 11월) 10일까지 지원금 신청
- 지원금 지급시기 : 지원금 신청일이 속한 달 말일~ 익월 초

※ 자세한 내용은 선정 후 안내, 11월 분 지원금은 12월 3일까지 신청

2

지원조건

가. 참여기업 자격 : ①~④ 조건을 모두 충족

- ① 채용하는 사업장 소재지 또는 채용자 주 근무장소가 경기도인 기업
 - ※ 신청기업의 사업장이 본사와 지사(지점) 등으로 구분되는 경우, 기업당 적용하는 채용 인원 한도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장 단위로 판단
 - ※ 본점이 경기도 외 지역이라도 분점, 지점, 대리점 등이 경기도 소재이면 인정
- ② 고용보험 피보험 근로자 1인 이상인 기업
- ③ 2025년 1월 1일 이후 정리해고 등 인위적 감원 사실이 없는 기업
 - ※ 인위적 감원 사실 확인: 고용보험 상실사유 코드번호 “23 ①~⑥” , “26 ③”
- ④ 아래 참여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

<참여 제외대상 기업>

- ① 「초·중등교육법」, 「고등교육법」, 「유아교육법」, 「사립학교법」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기관
- ②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
- ③ 일반유흥·무도유흥·기타 주점업,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, 무도장 운영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
- ④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
 - * 사업주 확인: 고용노동부 홈페이지>정보공개>체불사업주 명단 공개
- ⑤ 정부지원금을 부정하게 신청하거나 수급하여 반환 또는 지급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, 기관, 단체 등
- ⑥ 이외 도지사 또는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가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사업장
- ⑦ 근로자 파견업종
- ⑧ 중앙부처 및 지자체로부터 유사 지원금 사업 등 기업지원금을 중복으로 지원 받는 경우(예시: 요양, 운송, 보건, 어린이집 등)
- ⑨ 국세 및 지방세의 미납 연체가 있는 기업

나. 근로자 자격

-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* 50세 이상 65세 미만** 대한민국 국민

* 채용 후 경기도 전입자도 포함

** 1961년~1975년 출생자

- 라이트잡 사업으로 신규 채용한 근로자 ※1차 공고일 ‘25.2.19일 이후 입사자만 인정
- 주 24시간~주 35시간 사이 근로하는 조건으로 근로계약 체결
- 근로계약 기간 만 3개월 이상으로 체결
- 아래 채용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

<채용 제외대상>

- ① 사업주(법인은 대표이사)와 그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 및 친인척
- ② 2025년 내 채용기업에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는 사람
- ③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는 외국인
- ※ 단,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인 거주(F-2), 영주(F-5), 결혼이민자(F-6) 가능

다. 지원금 지급 요건

○ (임금수준) 2025년 최저임금* 이상 (주휴수당 포함)

- 시급 10,030원 + 주휴수당 적용 예시

구분	주 24시간*	주 30시간	주 35시간(최대)
근로시간	월 126시간	월 157시간	월 183시간
월 임금(이상)	1,263,780원	1,574,710원	1,835,490원

*<주 24시간 기준, 월 임금 산정 원칙>

1. **주단위 15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 지급 필수**
2. 주 근무시간 24시간인 경우, 주휴시간은 (24시간/40시간 x 8시간)으로 4.8시간으로 계산
3. 주 단위 소정근로시간은 (24시간 + 4.8시간) = 28.8시간으로 산출
4. 28.8시간에 월 평균 주수 4.345주를 곱하면 = 28.8시간 x 4.345주 = 125.136시간으로 계산
5. 최저임금 위반 방지로 시간 단위 올림으로 계산하면 **126시간으로 계산되며,**
최저임금 10,030원 적용 시 **1,263,780원으로 산출**

☞ 기업과 근로자 간 근로계약 금액이 월126.3만원 이상 되어야
최저임금법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하고 지원금 지급 가능,
월126.3만원 이하 근로계약 지원금 지급 불가

○ (임금지급) 기업에서 라이트잡 근로자에게 매월 임금 지급

○ (지원기간) 채용일~2025. 11. 30. 기간 중 임금을 지급한 기간

※ 단 11월분에 대한 지원금 신청서는 12월 3일까지 제출하여야 함

○ (지원한도) 기업당 최대 10명 예정

- 고용보험 피보험자 31인 이상 기업 : 최대 10명
- 고용보험 피보험자 11인~30인 기업 :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30% 이내
※ (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× 30%), 소수점 첫 째 자리에서 올림하여 계산
- 고용보험 피보험자 10인 이하 기업 : 최대 3명

고용보험 피보험자 수	지원 가능 인원	고용보험 피보험자 수	지원 가능 인원
1~10명	3명	21~23명	7명
11~13명	4명	24~26명	8명
14~16명	5명	27~30명	9명
17~20명	6명	31명 이상	10명

- (기업의무) 지원금 신청 대상 근로자에게 교육 제공 필수
- (지급순위) 사업참여 선정 후 채용근로자 정보를 제출한 순서
- (지급방법) 기업 격월 신청에 의해 사업자 통장으로 계좌이체

※ 예산 소진 시까지 지급하며, 예산이 소진된 경우 미지급함

3

신청방법

가. 기업 모집기간 및 지원 절차

절차	내용	플랫폼
기업 신청서 제출 (택1)	① 잡아바어플라이 신청 (https://apply.jobaba.net) ⇨ 통합회원가입 ⇨ 잡아바어플라이 검색창에 '베이비부머 라이트잡' 입력 후 선택 ⇨ 참가자격 및 공고문 확인 ⇨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첨부 후 제출 ② 당근 앱 신청 ⇨ 당근 앱 설치 ⇨ 나의당근 ⇨ 알바 ⇨ 경기도 라이트잡 일자리 배너 클릭 ⇨ 사업신청서 제출	잡아바 어플라이 당근(앱)
지원 대상 기업 선정	적합성 심사 후 승인(심사항목: 경기도 소재 여부,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수 1명 이상, 신청 사유 타당성) ※ 잡아바어플라이 시스템 상 선정 처리	잡아바 어플라이 기업신청
근로자 채용	✓ (잡아바) 선정된 기업은 잡아바 온라인 채용관, 잡아드림(앱)에 채용공고 게시 예정 ✓ (당근) 당근알바(앱)에 한달간 무료 채용공고 등록 가능 ✓ (고용24) 사업 참여 신청 시 고용24 등록 허용 동의 기업 대상 등록 - 고용24 경기중장년내일센터 구인신청서 접수 후 등록(매칭) ✓ 민간채용플랫폼 등 기타 수단을 활용한 자율 채용 가능 ✓ 경기도일자리재단 직업상담사를 통한 구직자 매칭 서비스 제공	잡아바 잡아드림(앱) 당근(앱) 고용24
근로자 정보 등록	채용 후 근로자 정보를 기업이 플랫폼에 등록하여 근로자 자격 확인	잡아바 어플라이 근로자정보등록
지원금 신청 및 지급	격월 신청 제출 서류 검토 및 서면 심사 → 지원금 지급 ※ 심사결과 및 서류보완 개별 연락	잡아바 어플라이 근로자정보등록

○ 신청방법: 온라인 접수

‘잡아바어플라이’ 검색하여 누리집 접속 후 ‘라이트잡’ 검색

또는, 신청 누리집 바로가기 <https://link24.kr/BIUe5Zv>

또는, 오른쪽 QR코드를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접속



○ [필수]제출서류 * 1개의 파일로 제출서류 첨부파일 등록란에 올리기

- ① [온라인 작성] 사업 참여 신청서 1부
- ② (택1) 사업참여 신청서 접수일 기준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
또는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1부
-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

나. 근로자 채용

○ 자체 채용 또는 일자리재단, 경기중장년내일센터 등 알선 채용

○ 근로계약 체결 후 일자리재단으로 통보(예산 소진 시 통보 순 마감)

※ 공고일 이후 선정된 기업이 자체적으로 채용하는 경우 채용근로자 근로시작일로부터 14일 이내 신청해야 함

○ 채용한 근로자 정보 잡아바 어플라이 ‘근로자 정보등록’ 에 온라인 입력

- 라이트잡 근로자와 채용기업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계약관계이므로
채용기업은 재단의 지원금 수령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자에게 급여 지급

○ [필수]채용 후 제출서류

- ① 사업주 확인서(일자리재단 제공 양식)
- ② 근로계약서(고용보험 취득 일자과 근로계약일이 일치해야 하며 라이트잡
근로시간 주24~35시간 범위내 반드시 명기)
- ③ 신규채용 근로자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
- ④ (택1)신규채용 근로자의 주민등록초본* 또는 등본

* 채용시점에 경기도민이 아닐 경우, 지원금 신청 이전까지 경기도 전입 완료 후 주민등록초본을 재제출하여야 함

다. 지원금 신청

○ (신청방법) 잡아바 어플라이 근로자 정보등록 페이지에 온라인 신청

- 해당 페이지에 서류 일체 압축하여 지원금 서류 제출란에 업로드 → 기업 전담 상담원이 서류 확인 및 보완 안내 → 서면심사 → 지원금 지급
- 지원금 신청 : 매 홀수 달(5, 7, 9, 11월) 10일까지 지원금 신청
- 지원금 지급시기 : 지원금 신청일이 속한 달 말일~ 익월 초
- 근로자 1인 400천원×근무 개월 수 (채용일~2025. 11월분 까지만 지원)
- 기업당 월별로 사업참여자격 확인 후 근로자 인당 40만원 일괄지급

※ 단, 근로자의 해당월 급여가 라이트잡 사업 지원금 지급액인 40만원 이하일 경우에 한하여 일할계산하여 지급

○ [필수]제출서류

- ① 채용지원금 지급 신청서(소정양식)
- ② 월별 임금 지급을 증빙하는 서류(예: 임금지급대장, 급여이체내역서 등)
- ③ 근로자 교육 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예: 교육수료증, 교육일지 등)
- ④ 기업 통장사본
- ⑤ (택1)지원금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
또는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1부
- ⑥ 국세/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
- ⑦ 2025. 1. 1.부터 기업 모집 신청일까지의 고용보험상실자 목록 1부
 고용보험 산재보험 토털서비스 캡쳐화면 (근로자정보 등록페이지 '참고자료' 내 상세안내)

○ [교육] 채용지원금 신청을 위한 근로자 필수교육

- 교육 목적 : 근로자 역량 강화 및 소양 함양을 위한 월 1회 필수교육 시행
- 교육 내용 :근로자의 직무역량 강화 및 소양교육, 범정의무교육 등 기업의 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

※ 단, 교육 이수 관련 증빙 서류 필수 제출해야만 지원금 지급 가능

따라서, 지원금 격월 신청 → 교육 증빙 서류 2개

- 교육 방법/시기 : 온라인, 오프라인 모두 가능 / 매월 1회 교육 이수

※ 월 1회 교육이수가 원칙이나 기업 상황에 따라 지원금 지급 격월 신청 시 증빙서류 2개만 충족하면 교육 이수 인정

※ <참고> 교육 운영이 힘든 사업장을 위한 무료 교육과정 안내

꿈날개 (www.dream.go.kr) 회원가입 후 메인화면 상단에 직업교육 > 온라인과정 수강

4

선정 취소 및 지원중단

가. 기업 선정 취소 기준: 지원금 전액 환수 및 향후 사업 참여 제한

- 신청 서류 및 증빙 서류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(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, 구비서류 미제출 등)
- 참여자격 제외 기업 또는 부적격 근로자인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
-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

나. 지원금 지원 중단 기준

-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사업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
- 지원금 지급을 위해 재단이 안내한 기한 이내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
- 이 외 참여기업 및 참여자의 자격이 해당 사업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등

5

참여안내 및 문의

- 경기도일자리재단 서부사업본부 서부광역사업팀 031)270-9941